삼 척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시 보

제1200호 2021. 11. 19.(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186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2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1228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5
○ 삼척시 공고 제1229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8
○ 삼척시 공고 제1230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11
○ 삼척시 공고 제1295호 제231회 삼척시의회(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 14
○ 삼척시 공고 제1303호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 16
○ 삼척시 공고 제1305호 어업면허 처분 공고 ---------- 18

공람									

발행 : 문화홍보실 (전화 : 570-3229,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21 -186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1. 16.

삼 척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989-1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 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222-6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989-1	20211116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 연결구간으로 기존도로명활용
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855-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안1길 49-7	20211116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사용 (임원안길분기)
3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노경리 179-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노경2길 68	20211116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일련번호방식)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계	3건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222-6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989-1	20211116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기존도로명활용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855-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안1길 49-7	20211116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사용(임원안길분기)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노경리 179-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노경2길 68	20211116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일련번호방식)	

삼척시 공고 제2021-1288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고기간 : 2021.11.16. ~ 2021.11.30. (15일간)
3. 말소(예정)일자 : 2021.12.01.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배금○
	주 소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134-2
		목조/스레이트즙 (1층:35.88㎡ 주택)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1. 16.

삼 척 시 장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 관리부서
○ 연 락 처 : 033)570-3965

삼척시 공고 제2021-1289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고기간 : 2021.11.16. ~ 2021.11.30 (15일간)
3. 말소(예정)일자 : 2021.12.01.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이종○
	주 소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134-2
		목조/스레트 (1층:28.13㎡ 주택)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1. 16.

삼 척 시 장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 관리부서
○ 연 락 처 : 033)570-3965

삼척시 공고 제2021-1290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고기간 : 2021.11.16. ~ 2021.11.30. (15일간)
3. 말소(예정)일자 : 2021.12.01.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홍성○
	주 소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134-2
		시멘트블럭조/스레트즙 (1층:18㎡ 주택)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1. 16.

삼 척 시 장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 관리부서
○ 연 락 처 : 033)570-3965

삼척시 공고 제2021-1295호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제231회 삼척시의회(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17.

삼 척 시 장

제231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부의안건]

1. 2022년도 본예산안 (기획조정실)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조정실)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별첨) (기획조정실)
4. 삼척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기획조정실)
5. 삼척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기획조정실)
6. 삼척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기획조정실)
7. 삼척시 국어 진흥 조례안 (문화홍보실)
8. 삼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략사업과)
9. 삼척중앙시장 주차타워 민간위탁 동의안 (전략사업과)
10.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출연 동의안 (자원개발과)
11. 도계장학재단 향토장학금 출연 동의안 (자원개발과)
12. 삼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13. 삼척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무과)

14. 삼척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15. 삼척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총무과)
16.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
17.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
18.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19. 삼척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20. 삼척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21. 삼척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민원과)
22.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과)
23.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과)
24. 삼척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건강증진과)

삼척시 공고 제2021-1303호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삼척 농어촌도로 근덕309호선(심방)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주소 불명, 사망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삼 척 시 장

1. 사업개요
   - ○ 사 업 명 : 삼척 농어촌도로 근덕309호선(심방) 개설사업
   - ○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386-1번지 일원
   - ○ 사업시행자 : 삼척시장
2. 공고기간 : 2021. 11. 18. ~ 2021. 12. 3.(15일간)
3. 공고내용
   - ○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기한 내
   - ○ 협의장소 : 삼척시청 도시과(☎ 033-570-3877)
   - ○ 보상방법 : 현금보상
   - ○ 보상절차
     - 토지소유자 사망시 상속등기 후 보상 가능
     - 소유권 이외의 권리(근저당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 후 보상 가능

4. 공시송달 대상

소재지	편입지번	지목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해 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산135-3	임야	124	강원도 삼척군 근덕면 상**리 3*0	이*태			사망 (주소불명)

5. 기타 안내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상협의에 관한 방법, 절차,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도시과(☎ 033-570-3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공고 제2021 - 1305호

어업면허 처분 공고

2021/2022년 삼척시 어장이용개발계획에 의한 어업면허 처분사항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4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 어업면허 처분

어업의 명 칭	어업면허 처분현황				어장의 위 치	어업 권자	비 고
	구 분	면허번호	면허기간	면적			
정치망 어 업	어업면허 처 분	2021-4호	2021.11.18. ~ 2031.11.17.	10.5ha	초곡리 지선	김상우	
정치망 어 업	어업면허 처 분	2021-5호	2021.11.18. ~ 2031.11.17.	59.4ha	문암리 지선	3명 대표 이상덕	

삼 척 시 장